

4. 취득세 감면 및 종과세 여부

【질 의】

- 당사는 1997년 6월 25일 설립되어 리튬전지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1997년 8월 7일 사업용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조감법 제113조 제2항 및 제11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즉시 공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1998년 5월 4일 부도처리되어 당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거래은행인 ○○은행에서 당사의 채권을 1998년 11월 6일 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였고,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기업회생부가 신설되어 가동중인 공장은 ABS(자산담보부채권)매각 및 AMC(자산관리회사) 인계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침을 제정하여 1999년 8월 10일 당사는 기업회생 자격업체로 선정되어 1999년 4월 21일 자산 및 부채와 종업원 등 일체의 포괄적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계약한 후에도 계속하여 공장용으로 사용하다 2년경과 후인 2000년 3월 14일 당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소유권을 이전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조특법 제119조 제3항 및 120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기 감면 받은 취득세 및 등록세가 추징되지 아니하고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도 해당되지 않는지
- 또한, 1997년 12월 10일 증축 준공하여 취득한 건물도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 받은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해서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산 및 부채와 종업원 등을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규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기 과세면제 받은 취득세 및 등록세가 추징되지 않는지
 - ※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 자금사정으로 당해 기업이 부도처리되어 주거래은행인 채권은행에서 임의 경매로 인하여 타인에게 매각되었다면 2년 이상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음(행자부 세정 13407-294, 1999. 3. 10)
- 1997년 8월 7일 취득한 토지를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산 및 부채와 종업원 등을 포함한 일체의 포괄적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은행부채 ₩1,274,575,796 (토지가액 ₩727,612,760)을 양수인인 성림에너지에서 인수하